

기안용지

문류기호 문식번호	도경 30373-
보존기관	(영구) 준영구 10.5.3.1.
수신처 보존기관	준영구
시권일자	88. 6. .

(신라: 450-1385)

시행
특별
시행
시행

구 청 장

현 장

Handwritten signature and circular stamp with the character '삼' (Sam).

Handwritten signature and circular stamp.

Handwritten signature and circular stamp with the number '520'.

Circular stamp with the date '1988. 6.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부 청 장
도석영비서관
도석영비서관
도석영비서관

(제 1 관)

내 부 권 령

도석기립시설(운동장) 직권 승인

1. 석굴류별서 고시 제 510(88. 6. 22)호와 관련합니다.
2. 귀로로 도석기립시설(운동장) 변경(폐지) 결정된 우리구 관내

현상동 1호는 그 관공로 원대 수영장과 벽하여 도석기립시설 제 13호 및 같은 범시
행명 제 6호의 원대 귀급 규정이 지적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로자 합니다.

(제 1 관) 고 시 (안)

석굴류별서 고시 제 로

도석기립시설(운동장) 직권 승인

1. 석굴류별서 고시 제 510(88. 6. 22)호로 변경 결정된 도석기립시설(운동
장) 및 현상동 1호는 그 관공로 원대 수영장과 벽하여 도석기립시설 제 13호 및 같은 범시행명 제 6호의 원대 귀급 규정이 지적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로자 합니다.

규정에 의거 기쁨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경비과 (전화 445-1385) 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냅니다.

1988. 6.

서 울 목 별 시 장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	비 고
기정	운동장	성동구 광장동 138- 2	3,595	한강호 댐내 수임장
변경	-	"	-	면적

○ 지적승인 도면 : 성동구청 도시경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끝.

(별 3 간)

수신 : 수신처참조

발신 : 시장 (구청장)

제목 : 같은 건 보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40(33. 6. 22) 호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결정된 우리시(구) 관내 성동구(광장동 138- 2 한강호 댐내 수임장)에 대

하여 별첨 고시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면 2부. 끝.

수신처 : 건설부장관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청 (시설계획과장)

(제 4 관)

수신 : 서울특별시청

발신 : 구청장

참조 : 공보관

제목 : 시보 게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시보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 연명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지적 승연

나. 게재 구분 : 고 시

다. 관련 법규 : 도시계획법 제 13조

첨부 : 1. 고시문 사본 2부. 끝.

(제 5 관)

수신 : 서울특별시청

발신 : 구청장

참조 : 시면과장

제목 : 관련 납연 의뢰

1.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지적 승연에 따른 아래 공문에 관련 납연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부 시행공문 1부. 끝.

첨부 : 1. 건설부 시행공문 사본 1부. 끝.

(제 6 안)

수신 : 수신처참조

발신 : 구청장 (과장)

제목 : 같은 건 통보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40(88. 6. 22)호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결정된 우티구 관내 공장동 188-2 한강호텔내 수영장이 대하여 별첨과
각각 지적 승인 하였기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규칙도 1부.

2. 고시문 사본 1부. 끝.

수신처 : 기획감사과, 세무2과, 재무과, 위생과, 건설관리과, 수도공사와, 간축과
(제 7 안) 관장등 (각)

수신 : 성동구 공장동 18-2

발신 : 성동구청장

제목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결정(폐지) 및 지적 승인 통보

1. 귀하께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폐지 신청한 우티구 관내 공장동

188-2 한강호텔내 수영장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과 같이 변경 결정(폐지) 및
지적승인하였기 통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끝.